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	펀드명	클래스 신설	환매 수수료 삭제	결산	변동성	이해 관계인 삭제	변경사항
1	미래에셋FINEMMF1호(국공채)	-	-	○	○	○	6)
2	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6)
3	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 (주식-재간접형)	-	-	○	○	○	6)
4	미래에셋골드특별자산투자신탁(금-재간접형)	○	-	-	-	-	-
5	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○	○	○	-
6	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투자신탁(USD)(채권)	-	-	○	○	○	6), 7)
7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(주식)	-	-	-	○	○	6), 8)
8	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 파생형)	○	-	-	-	○	-
9	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○	-	-	-	○	6)
10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6호	-	-	○	-	○	3)
11	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투자신탁1호(H)(채권)	-	○	○	○	○	6)
12	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투자신탁1호(UH)(채권)	-	○	○	○	○	6), 7), 8)
13	미래에셋미국인덱스EMP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-	○	○	○	-
14	미래에셋변액보험베트남증권투자신탁(H-USD)(주식-파생형)	-	-	○	○	○	6), 8)
15	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투자신탁(주식)	-	○	○	○	○	6), 7), 8)
16	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-	○	○	○	6), 8)
17	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6)
18	미래에셋연금인디아인프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6), 7)
19	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-1호(주식)	-	-	○	-	○	-
20	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-
21	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6)
22	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6), 7)
23	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6)
24	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6)

2. 변경 사항:

- 1) 클래스 신설
- 2) 환매수수료 삭제
- 3) 세제 혜택 연장 관련 변경
- 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
- 6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7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8) 법 개정사항 반영
- 9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7월 29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- 1) 클래스 신설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[아래참조1]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<신설>	[아래 참조 1]
제39조(보수)	<신설>	[아래 참조 1]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 환매수수료	<신설>	[아래 참조 1]
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	
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	
제2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신설>	[2022.07.29] [아래 참조 1]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[종류형 구조]		
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<신설>	[아래 참조 1]

[참조 1] 가입자격

구분	가입자격
종류 C-P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
종류 C-Pe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

펀드명	신설클래스	판매보수(%)	선취 판매 수수료(%)	환매 수수료
미래에셋로저스 Commodity 인덱스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종류 C-P	0.88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	종류 C-Pe	0.44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종류 C-P	0.88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	종류 C-Pe	0.44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미래에셋골드특별자산투자신탁(금-재간접형)	종류 C-P	0.72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	종류 C-Pe	0.36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2) 환매수수료 삭제

-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투자신탁1호(H)(채권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1조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	<u>2. 종류A-e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3. 종류AG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4. 종류C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5. 종류C-e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6. 종류CG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7. 종류C-I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8. 종류F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9. 종류S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10. 종류C-P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11. 종류C-Pe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12. 종류C-P2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13. 종류C-P2e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14. 종류C-PI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A, A-e, AG, C, C-e, CG, C-I, F, S, C-P, C-Pe, C-P2, C-P2e, C-PI] 3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(UH)(채권)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1조(환매수수료)	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	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	<p><u>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 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<u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<u>1. 종류A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2. 종류A-e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3. 종류AG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4. 종류C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5. 종류C-e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6. 종류CG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7. 종류C-I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8. 종류F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9. 종류S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10. 종류C-P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11. 종류C-Pe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12. 종류C-P2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13. 종류C-P2e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14. 종류C-PI 수익증권</u> <u>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	
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A, A-e, AG, C, C-e, CG, C-I, F, S, C-P, C-Pe, C-P2, C-P2e, C-PI] 3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투자신탁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1조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: 이익금의70% 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30%</p> <p>2. 종류A-e 수익증권 30일미만: 이익금의70% 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30%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 환매수수료 >	<p>[A, A-e] 30 일미만: 이익금의 70% 30 일이상 90 일미만: 이익금의 30%</p>	<p>환매수수료 없음</p>

3) 세제 혜택 연장 관련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4. 나. 과세 (4)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<p>-가입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</p>	<p>-가입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</p>

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
미래에셋FINEMMF1호(국공채)	6	6	0.06	0.05
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17.67	17.34
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2	2	15.73	15.66
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)	1	1	30.14	30.15
미래에셋달리단기자금증권투자신탁(USD)(채권)	5	5	0.55	0.6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(주식)	1	2	25.19	24.72
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투자신탁1호(H)(채권)	4	3	9.62	10.16
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투자신탁1호(UH)(채권)	3	3	10.33	10.46
미래에셋미국인덱스EMP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2	2	21.08	20.77
미래에셋변액보험베트남증권투자신탁(H-USD)(주식-파생형)	2	2	-	20.79
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투자신탁(주식)	2	2	23.75	23.41
미래에셋솔로몬중앙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5	5	1.9	2.4
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1	1	27.32	52.43
미래에셋연금인디아인프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22.55	22.82
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2	2	23.74	23.43
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2	9.75	15.48
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3	3	12.76	12.44
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4	4	7.2	7.13
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5	5	3.7	4.14

6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가방법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(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 시가)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(외국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)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 시가)</p>

7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5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 사항 없음

8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</u>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통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, <생략></u>	2. <생략> 나. <삭제>

<p>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	<p>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~③ 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~③ <생략></p> <p>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대상	<p>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</p> <p>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</p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, <생략></p>	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</p>

9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가.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

	- <u>일반사무관리회사 :</u>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	<삭제>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 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